

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

(의안번호 제270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

최두임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8.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 (안 제1조 ~ 제3조)
- 의회사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함 (안 제4조)
- 직무 관련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(안 제5조 ~ 제11조)
- 직무 관련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함 (안 제12조 ~ 제19조)
-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20조 ~ 제22조)
- 위반행위 및 금지금품 관련 신고와 처리, 행동강령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23조 ~ 제2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무원 행동강령」, 「공직자 윤리법」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41호

- 예고기간: 2023. 11. 13.(월) ~ 2023. 11. 20.(월)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, 법령과 조례·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4조제1항 ‘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.’로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